중도금대출 자서 안내문

■ 중도금 대출 안내

구분	내용
대상	신규계약자 및 자납세대 中 대출신청 세대 [201동,202동,204동 한정]
일정	일정 확정 시 문자 및 우편 안내 예정
장소	정읍 상동 예다음2차 견본주택 [정읍시 정읍사로 568]
구비서류	구비서류 안내문 참조

※ 자납세대 中 다음회차부터 대출신청 예정세대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[대표번호 : 063-533-0053]

■ 중도금 자납세대 안내

구분	1회차	2회차	3회차	4회차
납부일정	계약자별 상이	2026.06.25.	2027.08.25.	2028.02.25.
납부금액	각 회차별 분양가의 15%금액			
납부계좌	광주은행 / 1107-021-862911 / ㈜와이엠개발			

■ 유의사항

※ 중도금대출 미예약 방문 시 장시간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중도금대출 신청은 계약자 본인만 가능하며, 제3자 대리인 신청 절대 불가합니다. (공동명의자 모두 방문 필수)

※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대출 불가 세대는 해당 일정에 자납하셔야 합니다.)

※ 대출신청에 따른 제반비용(출자금 및 인지세 등)은 계약자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
※ 기타 대출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원광새마을금고	신도새마을금고
문의전화	063-841-6912	063-213-0383
비고	※ 각 세대별 해당 금고가 상이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	

YEDAUM

중도금대출 구비서류 안내 – 새마을금고

대출대상	▶ 계약금 10%이상 납부한 분양계약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분양계약자 (소득증빙필수) 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새마을금고 대출대상자 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▶ 세대 합산 중도금대출(HUG보증서) 2건 이상 보유고객은 대출취급 불가 ▶ 법인 및 단체는 중도금대출 취급 불가(가계대출이므로 취급불가)
대출한도	▶ 분양금액의 60%이내 –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서 발급 범위 내
상환기일	▶ ~ 2029년 5월 31일 이내 – 입주예정일 6개월 이내 /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원리금 납부관련 사업주체 문의
상환방식	▶ 만기일시상환
금리	▶ 기준금리+가산금리 – 대출신청 시 확정 ※ 대출실행일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금리가 확정되며, 대출실행 후 6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.
서류관련 유의사항	▶ 모든 대출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. ▶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, 공동명의인 모두 서류를 각각 제출하시기 바라며, 공동명의인 모두 동반 참석하여야 합니다. 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료 할인대상 확인서류(할인 대상자만 준비)

필수서류

1. 분양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(10%) 납부 영수증 사본 or 입금증(내역) 사본
2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– 모바일 신분증 불가
3. 인감도장
4. 인감증명서 2부(본인발급분)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– 전자민원용 인감증명서 사용불가
5. 주민등록초본 1부(과거 주소변동 포함 발급, 주민번호 및 성명 변동 포함
   - 등본상 세대원별로 각각 1부씩 발급
   -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등봉상 세대원 각각 1부씩 발급
6. 주민등록등본 1부 – 주민번호 모두 포함,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등본 추가
7. 가족관계증명서 1부 – 상세발급, 신청인 기준 주민번호 모두 포함
8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T.1577-1000 건강보험공단 문의) → '계약자 본인' 명의 현재 기준 발급 요망, 공동명의고객은 각각 발급
9. 국세납세증명서
10. 지방세납세증명서
11. 소득증빙서류 – 아래 표 참고

근로소득자	사업소득자
① 재직증명서 원본 – 회사날인 필수 ②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– 단기 재직자는 최근 3개월분 금여명세서	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1개년 소득금액증명원 – 증명원 발급 불가 시[사실증명원 (신고사실없음)] + [건강,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 이상) 추가제출

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	건강보험	신용카드	연금소득자
① 위촉증명서 +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) 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–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) 제출	▶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+ 건강보험료 최근 1개년 납부확인서	▶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카드사용내역 (1,000만원 이상 사용 – 본인 명의)	▶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+ 통장거래내역 확인서

대출관련 비용안내	▶ 중도상환 수수료 : 면제(단, 타금융기관 대환시 1.5%) ▶ 인지세(50%) : 1억원 초과 75,000원(본인부담금) 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수수료 : 고객부담, 보증금액의 0.13%(보증요율)
유의사항	▶ 대출신청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, 대리신청은 불가 합니다. (공동명의자 동반 방문 신청) ▶ 정부정책, 금융시장 환경 변화 및 계약자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. ▶ 계약자의 신용상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중도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 ▶ 대출 취급 시 고객부담으로 인지대금(50%), 보증료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. ▶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율 연3%]이 적용되며,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▶ 새마을금고 내규 및 대출협약(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소득증빙 기준미달)등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. ▶ 본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 ▶ 대출 상담 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◆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보험료 할인대상 및 확인서류

구 분	내 용	구 비 서 류
사회배려계층 (40% 할인)	**[저소득가구]**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	○ 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–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모두 제출
	[다자녀가구] 보증신청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	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	[장애인가구]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 직계존비속이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	○ 장애인증명서 (장애인등록증 불가)
	[고령자가구]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이 세대원 중 1인 이상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인 기준 1년 이상 거주 동거 65세 이상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	○ 주민등록등본
	[신혼부부]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,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인 경우	○ 혼인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 ○ 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○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모두 제출
	[다문화가구]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○ 외국인등록증 ○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소))
	[국가유공자가구]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독립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국가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보훈보상대상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5·18민주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특수임무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○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	[의사상자가구]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 증서,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의사자(유족증)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○ 의사자(유족증)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
사회배려계층 (60% 할인)	**[한부모가구]*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구 중인 경우	○ 한부모가족증명서
	[독거 고령자가구] 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비속,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	○ 주민등록등본
모범 납세자	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%를 할인	○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) – 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

대출 신청인 및 세대원이 위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보증료 할인 대상으로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입니다.)

YEDAUM